취 · 창업지원 규정 <개정 2023. 1. 30.>

제정 2017.10.11. 전문개정 2020.06.12. 개정 2021.10.05. 개정 2023.01.30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 취·창업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1. 30.>
- **제2조**(조직) ① 본 취·창업지원 업무의 주관부서는 취창업지원팀으로 한다. <개정 2023. 1. 30.>
 - ② 취창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3. 1. 30.>
 - 1. 취・창업지원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<개정 2023. 1. 30.>
 - 2. 학생의 취·창업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업무
 - 3. 취업통계조사 및 DB 관리에 관한 업무
 - 4. 취업상담 및 취업 추천에 관한 업무
 - 5. 학생 교내 · 외 창업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
 - 6. 학생 이력 관리 규정에 따른 학생 이력 관리 업무
 - 7. 기타 학생 취·창업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
 - 8. 평가 및 환류
- 제3조(운영위원회) ① 취·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창업운영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1. 30.>
 -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4조(전문가 자문) ① 취·창업지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, 재학생에게 실질적인 취·창업 정보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. 30.>
 - ② 교내・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활동에 대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. 30.>
 - ③ <삭제 2023. 1. 30.>
 - ④ <삭제 2023. 1. 30.>

[본조신설 2021. 10. 5.]

[제목개정 2023. 1. 30.]

부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